

[일반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문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7/30(목) ~ 8/7(금) 10:00 ~ 16:00 [9일간]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여부	체크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본인 외 모든 신분증 동일]	-	필수	☐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대리인 발급분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전자인감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방문시에만 사용 가능	본인발급분	필수	☐
3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4		배우자	· 기혼자인 청약자의 등본상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6		직계존속	·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	해당 시	☐
7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상세	해당 시	☐
8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9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상세	해당 시	☐
10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11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12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13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	필수	☐
14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	해당 시	☐
15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	해당 시	☐
1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포함)	-	해당 시	☐
17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포함)	-	해당 시	☐
18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배우자	·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 “청약홈에서 출력”하여 제출	-	해당 시	☐
19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해당 시	☐
20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시	☐
21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서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해당 시	☐
22	기타 견본주택 필수 작성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	-	· 견본주택 비치된 필수 작성서류 및 부적격 소명 등을 위한 서류 [해당시 별도 안내 예정]	-	필수	☐

■ *발급기준 안내

- 본인발급분 :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 본인발급란에 ○ 표시 (대리인란에 ○ 표시분 및 전자인감은 접수 불가)
- 전체포함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체크하여 발급
- 상세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모든 관계사항 등 “상세” 체크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포함 전체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 적용, 출입국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자격확인서류외 추가구비] 위임장(당첨자인감 날인본) / 당첨자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문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7/30(목) ~ 8/7(금) 10:00 ~ 16:00 [9일간]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별 해당자에 따라 유의사항 확인 후 *발급기준에 맞춰 필수/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여부	체크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외 모든 신분증 동일]	-	필수	☐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대리인 발급분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전자인감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방문시에만 사용 가능	본인발급분	필수	☐
3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4		배우자	· 청약자의 등본상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6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7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8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증빙 서류	-	필수	☐
9	기타 견본주택 필수 작성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	-	· 견본주택 비치된 필수 작성서류 및 부적격 소명 등을 위한 서류 [해당시 별도 안내 예정]	-	필수	☐

■ *발급기준 안내

- 본인발급분 :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 본인발급란에 ○ 표시 (대리인란에 ○ 표시분 및 전자인감은 접수 불가)
- 전체포함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체크하여 발급
- 상세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 모든 관계사항 등 “상세” 체크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포함 전체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 적용, 출입국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자격확인서류외 추가구비] 위임장(당첨자인감 날인본) / 당첨자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문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7/30(목) ~ 8/7(금) 10:00 ~ 16:00 [9일간]	호반써밋 풍무Ⅲ 건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별 해당자에 따라 유의사항 확인 후 *발급기준에 맞춰 필수/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여부	체크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본인 외 모든 신분증 동일]	-	필수	☐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대리인 발급분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전자인감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	본인발급분	필수	☐
3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4		배우자	· 청약자의 등본상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5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6		직계 존속	· 세대구성 배점에 3세대 이상 배점을 산입한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7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8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산입한 경우 · 3세대 이상 배점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산입한 경우	상세	해당 시	☐
9			·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미포함 된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1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11		직계 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자녀수에 산입한 경우	상세	해당 시	☐
12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	필수	☐
13	임신진단서(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태아를 자녀수에 산입한 경우 · 담당의사명 / 의료기관 등록번호 / 출산예정일 / 의료기관 연락처 / 의료기관 직인 필수	-	해당 시	☐
14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산입한 경우	-	해당 시	☐
15	당첨 사실 확인서 [*출산특례]	본인	· *출산특례 사용 시 /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을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청약홈 발급	해당 시	☐
16	주택 처분 서약서 [*출산특례]	본인	· *출산특례 사용 시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건본주택 비치	M/H 비치	해당 시	☐
17	한부모 가족 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 경과 증명서	-	해당 시	☐
18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시	☐
19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서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해당 시	☐
20	기타 건본주택 필수 작성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	-	· 건본주택 비치된 필수 작성서류 및 부적격 소명 등을 위한 서류 [해당 시 별도 안내 예정]	-	필수	☐

■ *발급기준 안내

- 본인발급분 :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 본인발급란에 ○ 표시 (대리인란에 ○ 표시 및 전자인감은 접수 불가)
- 전체포함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체크하여 발급
- 상세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 / 모든 관계사항 등 “상세” 체크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포함 전체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 적용, 출입국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구비] 위임장(당첨자 인감 날인본) / 당첨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문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7/30(목) ~ 8/7(금) 10:00 ~ 16:00 [9일간]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별 해당자에 따라 유의사항 확인 후 *발급기준에 맞춰 필수/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여부	체크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본인 외 모든 신분증 동일)	-	필수	☐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대리인 발급분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전자인감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	본인발급분	필수	☐
3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세대주 여부 확인 등	전체포함	필수	☐
4		배우자	· 기혼자인 청약자의 등본상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5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6		직계 존속	· 과거 3년 이상 직계존속 부양사실 확인	전체포함	해당 시	☐
7		직계 비속	·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8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9		직계존속	·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	필수	☐
10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상세	해당 시	☐
11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12		직계 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상세	해당 시	☐
13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	필수	☐
14		직계 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	해당 시	☐
15		직계 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	해당 시	☐
1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 존속	· 직계존속을 3년간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포함)	-	해당 시	☐
17		직계 비속	·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포함)	-	해당 시	☐
18	당첨사실 확인서 [*출산특례]	본인	· *출산특례 사용 시 /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을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청약홈 발급	해당 시	☐
19	주택 처분 서약서 [*출산특례]	본인	· *출산특례 사용 시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견본주택 비치	M/H 비치	해당 시	☐
20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시	☐
21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서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해당 시	☐
22	기타 견본주택 필수 작성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	-	· 견본주택 비치된 필수 작성서류 및 부적격 소명 등을 위한 서류 [해당 시 별도 안내 예정]	-	필수	☐

■ *발급기준 안내

- 본인발급분 :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 본인발급란에 ○ 표시 (대리인란에 ○ 표시분 및 전자인감은 접수 불가)
- 전체포함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체크하여 발급
- 상세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 / 모든 관계사항 등 “상세” 체크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포함 전체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 적용, 출입국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구비] 위임장(당첨자 인감 날인본) / 당첨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문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7/30(목) ~ 8/7(금) 10:00 ~ 16:00 [9일간]	호반써밋 풍무Ⅲ 건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별 해당자에 따라 유의사항 확인 후 *발급기준에 맞춰 필수/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여부	체크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본인 외 모든 신분증 동일)	-	필수	☐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대리인 발급분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전자인감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	본인발급분	필수	☐
3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4		배우자	· 기혼자인 청약자의 등본상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체포함	해당시	☐
5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6		직계 존속	· 소득산정 가구원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한 경우	전체포함	해당시	☐
7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8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미성년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	해당시	☐
9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1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	필수	☐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대원 전원	· 본인 및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필수	☐
12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소득·자산증빙서류 안내문 참조	-	필수	☐
13	임신진단서(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태아를 자녀수에 산입한 경우 · 담당의사명 / 의료기관 등록번호 / 출산예정일 / 의료기관 연락처 / 의료기관 직인 필수	-	해당시	☐
14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산입한 경우	-	해당시	☐
15	당첨 사실 확인서 [*출산특례]	본인	· *출산특례 사용 시 /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을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청약홈 발급	해당시	☐
16	주택 처분 서약서 [*출산특례]	본인	· *출산특례 사용 시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건본주택 비치	M/H 비치	해당시	☐
17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해당시	☐
18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서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해당시	☐
19	기타 건본주택 필수 작성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	-	· 건본주택 비치된 필수 작성서류 및 부적격 소명 등을 위한 서류 [해당시 별도 안내 예정]	-	필수	☐

■ *발급기준 안내

- 본인발급분 :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 본인발급란에 ○ 표시 (대리인란에 ○ 표시 및 전자인감은 접수 불가)
- 전체포함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체크하여 발급
- 상세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 / 모든 관계사항 등 “상세” 체크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포함 전체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 적용, 출입국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구비] 위임장(당첨자 인감 날인본) / 당첨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문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7/30(목) ~ 8/7(금) 10:00 ~ 16:00 [9일간]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별 해당자에 따라 유의사항 확인 후 *발급기준에 맞춰 필수/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여부	체크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외 모든 신분증 동일]	-	필수	☐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대리인 발급분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전자인감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	본인발급분	필수	☐
3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4		배우자	· 기혼자인 청약자의 등본상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5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6		직계 존속	· 소득산정 가구원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한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7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8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미성년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	해당 시	☐
9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직계 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적용한 경우	상세	해당 시	☐
1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	필수	☐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대원 전원	· 본인 및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필수	☐
12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본인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소득·자산증빙서류 안내문 참조	-	필수	☐
13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	필수	☐
14	임신진단서(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태아를 자녀수에 산입한 경우 · 담당의사명 / 의료기관 등록번호 / 출산예정일 / 의료기관 연락처 / 의료기관 직인 필수	-	해당 시	☐
15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산입한 경우	-	해당 시	☐
16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시	☐
17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서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해당 시	☐
18	기타 견본주택 필수 작성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	-	· 견본주택 비치된 필수 작성서류 및 부적격 소명 등을 위한 서류 [해당 시 별도 안내 예정]	-	필수	☐

■ *발급기준 안내

- 본인발급분 :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 본인발급란에 ○ 표시 (대리인란에 ○ 표시분 및 전자인감은 접수 불가)
- 전체포함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체크하여 발급
- 상세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 / 모든 관계사항 등 “상세” 체크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포함 전체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 적용, 출입국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구비] 위임장(당첨자 인감 날인본) / 당첨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문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7/30(목) ~ 8/7(금) 10:00 ~ 16:00 [9일간]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별 해당자에 따라 유의사항 확인 후 *발급기준에 맞춰 필수/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여부	체크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본인 외 모든 신분증 동일]	-	필수	☐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대리인 발급분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전자인감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	본인발급분	필수	☐
3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4		배우자	· 기혼자인 청약자의 등본상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5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전체포함	필수	☐
6		직계 존속	· 소득산정 가구원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한 경우	전체포함	해당 시	☐
7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8		배우자	· 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가 확인되지 않거나,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미성년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	필수	☐
9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	필수	☐
1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	필수	☐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대원 전원	· 본인 및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필수	☐
12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소득·자산 증빙서류 안내문 참조	-	필수	☐
13	임신진단서(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담당의사명 / 의료기관 등록번호 / 출산예정일 / 의료기관 연락처 / 의료기관 직인 필수	-	필수	☐
14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필수	☐
15	당첨 사실 확인서 [*출산특례]	본인	· *출산특례 사용 시 /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을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청약홈 발급	해당 시	☐
16	주택 처분 서약서 [*출산특례]	본인	· *출산특례 사용 시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견본주택 비치	M/H 비치	해당 시	☐
17	해외근무자(단신부입)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시	☐
18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서 기타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해당 시	☐
19	기타 견본주택 필수 작성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	-	· 견본주택 비치된 필수 작성서류 및 부적격 소명 등을 위한 서류 [해당 시 별도 안내 예정]	-	필수	☐
20	대리인 방문 추가 구비서류		[자격확인 서류 외 추가 구비] · 위임장(당첨자 인감 날인본) / 당첨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 *발급기준 안내

- 본인발급분 :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 본인발급란에 ○ 표시 (대리인란에 ○ 표시 및 전자인감은 접수 불가)
- 전체포함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체크하여 발급
- 상세 : 본인포함 전체 세대원 성명/주민번호 / 모든 관계사항 등 “상세” 체크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포함 전체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 적용, 출입국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자격확인 서류 외 추가 구비] 위임장(당첨자 인감 날인본) / 당첨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소득·자산 증빙서류 (1/2)



■ 소득증빙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① 본인의 소득자격 구분은 국민건강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직장가입자-근로자,지역가입자등-자영업자또는 기타직종
- ② 모든 소득증빙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곳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만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 ※ 본 리스트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증빙서류이며, 당첨자 개인의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구분			구분	체크	서류	발급처
당첨자 전원 필수 공통서류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근로자 공통 필수서류		2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및 휴직기간 명시,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일반근로자	기본 증빙서류	3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작년에 휴직기간이 있으신분	4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해당직장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분	5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기본 서류	6	☐	
	근로기간 1개월 미경과 등으로 기본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7	☐	당첨자와 동일직장·직급·호봉인자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전직자		8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분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9	☐	근로계약서(총급여액 및 근무기간 명시 필수)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자집조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이신분		10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출산휴가 중 정상급여 확인 불가시)	
			11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휴직기간 명시)	
자영업자	자영업자 공통 필수서류		12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청 홈택스
	일반·간이·면세사업자		13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증빙이 불가한분	국민연금 가입자	14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모집공일 이전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미가입자	15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모집공일 이전 최근)	세무서
	법인사업자		16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17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18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19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20	☐	법인의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직종 등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21	☐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해촉증명서	해당직장
			22	☐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	
			23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	기본 서류	24	☐	근로계약서(총급여액 및 근무기간 명시 필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자집조서)	해당직장
		기본 서류가 없는 경우	25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6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27	☐	비사업자 확인각서	건본주택 비치
			28	☐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 없음)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군복무중(직업군인제외)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무소득으로 간주
	현재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이남에도 전년도/당해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눠 소득 산정
	자영업자+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사업소득은 손실시 없는 것으로 간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소득·자산 증빙서류 (2/2)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9.)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자격구분	번호	체크	서류	유의사항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1	☐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및 토지대장	
		3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전체 발급. *건축물 *토지 *주택)	
	추가(해당자)	4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5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	
		6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7	☐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8	☐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미성년자 포함 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9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전체 발급. *건축물 *토지 *주택)	해당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 소유현황: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주민센터’ → ‘전국내역’ 발급하여 제출
※ 서울시: ‘이택스’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시기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5개년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 안내

※ 모든 증빙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곳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만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리스트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증빙서류이며, 당첨자 개인의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구분	번호	체크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공통 자격입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	재직 증명서	해당 직장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납부내역증명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자격별 전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중 하나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 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장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해당 직장/세무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작성 예시



※ 본 안내문의 금액 및 표시 사항은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호 (타입)

(A) 아파트 공급금액	(B)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C)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총 공급금액 (A) + (B) +(C)
600,000,000 원	5,000,000 원	원	625,000,000 원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계약자 주소(법인소재지)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생략)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계약자 (휴대)전화번호 계약자

① 자금 조달 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③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
		계약자 명의의 예금, 적금 등 원	계약자 명의의 주식·채권·가상자산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
		④ 증여·상속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 자금 원	보유 현금 및 그 밖의 자산의 합계 원
		⑥ 부동산 처분 대금 등	⑦ 소계 (②+③+④+⑤+⑥)
		타 부동산 처분 및 전월세 보증금 회수,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자금 원	(②+③+④+⑤+⑥)의 총 금액 원
	차입금 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i) 주택담보대출
		i) 주택담보대출+ ii) 신용대출+ iii) 그 밖의 대출 원	기존 보유 주택의 담보대출 금액 원
			ii)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원
		iii) 그 밖의 대출	중도금 대출 금액 원
			대출 종류 : 중도금 집단 대출 60%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기존 보유주택 여부(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미보유 □ 보유 (건)
		⑨ 임대보증금	⑩ 회사지원금·사채
		취득 주택 향후 임대 시 실행 계획 자금 원	매수인 본인 소속 회사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금액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원
		⑪ 그 밖의 차입금(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⑫ 소계 (⑧+⑨+⑩+⑪)
		제3자(가족/친인척 포함)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빌리는 자금 등 원	(⑧+⑨+⑩+⑪)의 총 금액 원
		⑬ 합계 (⑦+⑫)	(⑦+⑫) 합계 아파트 분양금액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합계 금액 원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⑮ 합계금액 원
	⑮ 계약이체 금액	위 총 거래금액과 동일 기재 ⑮ 합계금액 원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작성 생략 원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작성 생략 원
지급 사유 ()		작성 생략

⑱ 입주 계획	해당 입주예정자 칸 체크 'V'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 2030 년 1 월)	⑲번 기재 시 체크 'V' □ 임대 (전·월세)	작성 생략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	-------------------------------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같은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7항·제9항·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날짜 작성 금지 일 제출인 계약자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동산 분양계약은 과세대상으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의 의거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입니다. •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 분양계약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기재 금액	• 분양대금 (총 공급금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및 보관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금액

구 분	인지세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50%)	해당 전용면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분양계약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59㎡ ~ 84㎡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1



네이버 및 그 외 포털사이트에 “전자수입인지” 검색
www.e-revenuestamp.or.k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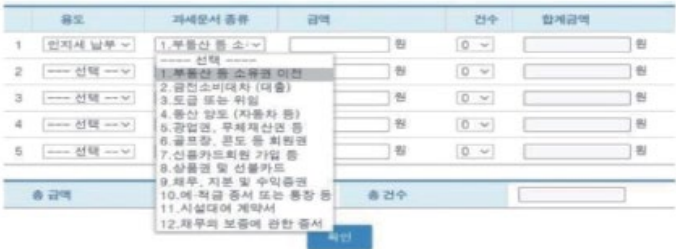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비회원 서비스 or 회원 로그인 후
구매 버튼 클릭

4



용도	과세문서 종류	금액	건수	합계금액
1. 인지세 납부	1. 부동산 등 소		0	
2. 선택	2.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0	
3. 선택	3. 공전소비대차 (대출)		0	
4. 선택	4. 도급 또는 위임		0	
5. 선택	5. 공업권, 무주재산권 등		0	
	6. 공복장, 콘도 등 회원권		0	
	7. 신용카드회권 가입 등		0	
	8. 상품권 및 선불카드		0	
	9. 채무, 지분 및 수익증권		0	
	10. 예·착금 증서 또는 통장 등		0	
	11. 시설대여 계약서		0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0	

총 금액: 75,000 원 총 건수: 1건 합계 금액: 75,000 원

해당 전용면적	용도	과세문서 종류	금액	건수	합계 금액
59㎡~84㎡	인지세 납부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75,000 원	1건	75,000 원

5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므로 1회만 출력가능
※ 재출력 불가
※ 사전에 테스트 출력하여 인식이 여부 반드시 확인

당첨자 정당계약 체결 안내문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8.10.(월) ~ 12(수) 10:00 ~ 16:00 [3일간]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 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 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계약금 (1차)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10,000,000원	국민은행	393301-04-1215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발코니 확장비	타입별 확장비의 10%	국민은행	393301-04-121657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 (예 : 4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4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 ※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여부	체크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본인외 모든 신분증 동일]	-	필수	☐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대리인 발급분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전자인감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	본인발급분	필수	☐
3	전자정부수입인지	본인	· 59~84㎡ 75,000원 [인지세 납부 안내문 참고]	-	필수	☐
4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	필수	☐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	-	필수	☐
6	자격확인 구비서류 일체	본인	· 서류제출기간 내 자격확인 구비서류 제출 완료 고객 제외	-	해당시	☐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자격확인서류외 추가구비] 위임장(당첨자인감 날인본) / 당첨자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